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8
----------	---------

제출연월일: 2020년 4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안 제3조의2,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3.10.~3.30.)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한시기구) 신청사 건립 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둔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과장 김병옥

(담당: 행정7급 소윤희 / ☎ 2600-6032)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안 제3조의2,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행정기구 운영상 필요에 의해 내부적으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20. 3. 2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06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소윤희	전화번호	02-2600-6108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3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3월 16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3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